

파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) 채용 공고

파주시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(속기)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. 8. 10.

파주시의회 의장

I 채용개요

채용분야	인원	근무부서	계약기간	직무내용
속기 (기간제근로자)	3명	파주시의회	'26. 8. 31. ~ 9. 30. '26. 11. 23. ~ 12. 31.	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후속 작업(교정·편집)

II 응시자격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만 19세 이상인 자

※ 「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

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경력 또는 학력,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11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○ 우대사항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업무 경력
-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

Ⅲ 근무기간 및 지급단가

- 근무기간: 제1차 정례회 2026. 8. 31.(월) ~ 9. 30.(수) 주 5일, 1일 8시간
제2차 정례회 2026. 11. 23.(월) ~ 12. 31.(목) 주 5일, 1일 8시간
 - 제2차 정례회 시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
 - 근로계약은 계약기간(제1차 정례회 · 제2차 정례회)별로 각각 체결
- 근무시간: 주 5일, 1일 8시간 09:00~18:00(휴게시간 12:00~13:00)
 - * 회기 중에는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
- 지급단가: 일급 93,840원(2026년 파주시 생활임금 적용)
 - 주휴수당,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
 - 4대 보험 의무가입(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에서 처리)

Ⅳ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

○ 채용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채 용 공 고	8. 10.(월) ~ 8. 18.(화)	파주시의회 홈페이지
응 시 원 서 접 수	8. 10.(월) ~ 8. 18.(화)	전자우편 제출
서 류 합 격 자 발 표	8. 19.(수)	개별 통보
면 접 시 험	8. 21.(금)	장소: 1층 세미나실
최 종 합 격 자 발 표	8. 24.(월)	개별 통보

- 채용방법: 1차 서류전형 + 2차 면접전형
- 응시원서 접수
 - 접수기간: 2025. 8. 10.(월) ~ 8. 18.(화)
 - 접 수 처: 파주시의회(의회사무국 의사팀)
 - 접수방법: 전자우편으로 제출 (yhkim8801@korea.kr)
- 제출 서류
 - 가. 응시원서(붙임파일 참고)
 - 나.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붙임파일 참고)
 - 다. 자격증 사본
 - 라. 경력증명서

V

기타사항
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발생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채용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파주시의회 의사팀**(☎031-940-83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